참고 1	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12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		사업연도	2022. 01. 01. ~ 2022 .12.31.
① 법인(단체)명	리야드한국학교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NOJ47
③ 대표자 성명	김태경	④ 해외 한국학교 지정일	2019.06.28
⑤ 소재지	사우디아라비아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http://www.riyadhkorea.kr/

2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

⑦ 지정 요건 및 의무	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	⑨ 점검 결과
가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(재외국민에게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)일 것	충족	이상없음
나.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	개설되어있음	이상없음
다.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,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	해당사항없음	이상없음
라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)	공개	이상없음
마.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	충족	이상없음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9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23년 5 월 1 일

제출인 : 리야드한국학교 [인]

교육부장관 귀하

위 해외 한국학교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0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23 년 5 월 일

(통보기관의 장) 교육부장관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해외 한국학교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